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5년 1월 현재 서술형 279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7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웹페이지 **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Q 섬유유연제나 탈취제 뒷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 쓰여 있던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무엇인가요?

A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나 세정제와 같이 위해성이 있는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안전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생활화학제품"이란?

■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다음의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

분류	품목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여가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분류	품목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그 밖의 제품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위해성 평가에 따른 제품 지정)

■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본문).

※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

■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그 위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기 전에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

Q **해외에서 방향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A 안전기준이 고시된 방향제품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용량·매수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따른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Q **살균효과가 있는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살생물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물질승인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물질승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A 네,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물질승인의 기준

■ 물질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살생물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살생물물질의 유해생물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함)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 살생물물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않을 것
-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것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종류	유효기간
일반적인 살생물 물질	10년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 물질	7년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잔류성, 생물축적성 또는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유효기간이 7년인 살생물물질의 종류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5년

■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위반 시 제재

■ 살생물물질의 승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제3호의2 및 제56조제1항제7호·제8호).

구분	제재
물질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구분	제재
물질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을 받고(물질동등성을 인정받아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외)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물질승인을 받은(물질동등성을 인정받아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외)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 징역형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후단).

Q 청소용 살균·소독제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겉면에 제품의 성능에 대해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용하면 안되는 문구가 있을까요?

A 네. 살생물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무독성", "무해성"등과 같이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살생물제품 포장·광고시 주의사항

■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음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 ☑ 무독성
  - ☑ 환경·자연친화적

법 제 처
www.moleg.go.kr

- ☑ 무해성
- ☑ 인체·동물친화적
-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문구

•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 ☑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 ☑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 ☑ 제품의 효과·효능(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을 알리는 문구
- ☑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위반 시 제재

■ 위와 같은 살생물 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확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호).

Q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진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지급 기준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A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다음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기준 및 범위

■ 구제급여의 종류별 지급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48조의10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7 및 별표 3의3 참조).

종류	지급 기준·범위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요양급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다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의료급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장애일시보상금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다음의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등급 1급: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 기준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 이하 같음)의 28,500/1,000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등급 2급: 기준 중위소득의 20,520/1,000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등급 3급: 기준 중위소득의 13,680/1,000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등급 4급: 기준 중위소득의 6,840/1,000에 해당하는 금액
사망일시보상금	구제급여 지급 신청 당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위 장례비의 1,500/100에 해당하는 금액
장례비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등급의 기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2 참조.

키워드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물질승인 살생물제품 포장문구, 제품승인, 구제급여